

현 행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 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7. (생략)
- ② (생략)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③ (생략)
 <신설>

④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 13. (생략)
- <신설>

<신설>

⑤ (생략)

제31조(경보의 통일) 도급인인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당해 장소에서의 발파작업
2. 당해 장소에서의 화재발생

개 정

⑤ _____ 법 제15조의2제1항 _____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_____
 _____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_____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의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 _____

1. ~13. (현행과 같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삭제>

현 행

3. 당해 장소에서의 토석의 붕괴

제32조(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와 공사금액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1. ~ 3. (생략)

<신설>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생략)

개 정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_____

_____ 산업안전보건관리비 _____

_____ 산업안전보건관리비 _____

② _____

_____ 산업안전보건관리비 _____

③ _____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_____ 1억원 이상 _____ 120억원 미만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_____

1. 2. (현행과 같음)

3. _____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_____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생략)
- ②·③ (생략)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당해 기계등의 대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 가. 나. (생략)
- <신 설>

② (생략)

제50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생략)
- <신 설>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① 에너지융합리화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②·③ (생략)

제72조의3(등록신청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개 정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_____

 _____.

1. 2. (현행과 같음)
 3. _____
 _____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_____

 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 가. 나. (현행과 같음)
-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 _____

 _____.

1.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① _____

 _____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항만법 _____

 _____.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의3(등록신청등) ① _____

현 행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 5. 6. (생략)
- ②·③ (생략)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 1. 2. (생략)
- 3.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5. (생략)
- ②·③ (생략)

<신설>

개 정

- 1. 2. (현행과 같음)
- 3. _____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

- 4. 건물임대차계약서 _____
- 5. 6.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 1. 2. (현행과 같음)
- <삭제>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_____

- 1. 2. (현행과 같음)
- 3. _____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

- 4. 건물임대차계약서 _____
- 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 횡수조정승인의 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 2.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에서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때
- 3.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 이상이 된 때

현 행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와 보고)

-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 결과는 당해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 대한 산소농도의 측정결과는 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영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7. (생략)
- ② ~ ③ (생략)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생략)

- ② 사업주는 채용시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 정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와 보고)

-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제9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 대한 산소농도의 측정결과를 제외한다)를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 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2.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현행과 같음)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① _____

- 1. ~ 4. (현행과 같음)
- 5. _____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
- 6. 건물임대차계약서 _____
- 7.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_____
- _____ 국민건강보험법 _____
- _____

(다음호에 계속)

